

직무역량성취도 및 향상도 평가 규정

(제정) 2015-11-13 규정 제372호
(개정) 2016-04-25 규정 제397호
(개정) 2016-10-28 규정 제428호
(전부개정) 2017-06-19 규정 제465호
(개정) 2023-05-18 규정 제633호
(개정) 2023-12-01 규정 제65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의 학과에서 개발 및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직무역량성취도 및 직무역량향상도 평가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역량성취도란 직업기초능력 및 전공능력의 교과목 수업평가(직무수행역량평가) 결과 (점수)를 합산(평균)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학생별, 학과별, 직무별, 대학전체에 대한 직무역량성취도 측정 지표이다.
2. 직무역량향상도란 대학의 고등직업교육 성과를 나타내는 일차적인 지표로서 졸업예정자의 직무역량성취도의 전년대비 증감률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제3조(주관부서 및 관리부서) ① 직무역량성취도 평가계획, 산출방법, 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는 교학처, 교육혁신원, 학과가 분장하여 담당한다.

- ② 학과는 산출된 성취도 평가 결과를 점검 및 관리하고 지속적인 교육과정운영 전반의 개선활동을 수행한다.
- ③ 교육혁신원은 교육품질관리를 위한 직무역량성취도 평가에 대한 매뉴얼 및 지침을 작성하며, 학과 성취도를 취합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 ④ 교학처는 직무역량성취도 이수증 발급 및 사후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직무역량성취도 평가위원회) ① 직무역량성취도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역량성취도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하고, 직무역량성취도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내위원은 위원장 포함하여 5인 내외, 교외위원은 2인 내외로 총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직무역량성취도 평가 기본계획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2. 직무역량성취도 평가 도구 및 지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직무역량성취도 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직무역량성취도 평가 결과의 심의·활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5. 기타 직무역량성취도 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 사항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평가절차) 평가절차는 직업기초능력 교과목과 NCS 능력단위와 자체개발한 책무를 활용한 직무별 교과목에 대해 평가계획 수립, 평가실시·평가점수의 직무별 취합 및 분석, 평가 결과의 공람과 품질관리 보고서에 반영 및 조치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제6조(평가운영) 직무역량성취도 평가는 학생별, 학과별, 직무별, 대학 전체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각 평가의 제출 자료는 각 학과 및 교학처에서 보관·관리한다.

제7조(평가결과활용) ① 개인의 직무역량 성취도 평가결과는 지도교수가 매학기 교내 전산시스템을 통해 열람하고 학기별로 점검 및 관리하여 학생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생상담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② 학과의 직무역량 성취도 평가결과는 학과차원의 교육품질관리 보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지속적인 교육품질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개선조치를 시행한다.

③ 대학 전체의 직무역량 성취도 평가결과는 대학차원의 교육품질관리에 활용되어 교육과정 개선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④ 대학 전체의 직무역량성취도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직무역량 향상도를 산출하여 교육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8조(산출유형) 학과별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의 직무별 교육과정 로드맵에서 제시된 것을 바탕으로 각 직무에 필요한 직업기초능력 및 전공능력 교과목을 매핑(mapping)하여 직무역량 성취도를 산출한다.

1. 개인별 직무역량 성취도 평가결과는 학생이 소속된 학과의 각 직무와 매핑된 교과목들의 개인별 수업평가 결과(점수)를 합산(평균)하여 산출한다.
2. 학과별 직무역량 성취도는 학과 내 각 직무와 매핑된 모든 교과목들의 수업 평가 결과(점수)를 합산(평균)하여 산출한다.
3. 대학전체 직무역량 성취도는 대학 전체의 각 직무와 매핑된 교과목들의 수업평가 결과(점수)를 합산(평균)하여 산출한다.

제9조(평가영역) 평가영역은 직업기초능력과 전공능력으로 구분한다.

1.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직업기초능력 교과목의 평가점수를 의미한다.
2. 전공능력평가는 학과에서 도출한 직무별 교과목에서 NCS 활용 능력단위와 자체개발한 책무의 평가점수로 한다.

제10조(평가시기) ① 개인별 직무역량성취도 평가는 매학기 수강과목에 대해 2회 이상의 직무역량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매학기 말에 누적 취합하여 산출한다.

② 대학 전체 및 학과의 직무역량성취도 평가결과는 매년도 2학기말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누적 취합하여 산출한다.

제11조(수업평가) 수업평가는 진단평가, 출석평가, 직무수행역량평가 등 세 단계로 실시한다. 진단평가, 출석평가, 직무수행역량평가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단평가는 수업 전 혹은 수업 초기에 실시되는 학습자의 자가진단평가로서 수행준거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 기술, 태도 등으로 구성된다.
2. 출석평가는 학습자의 기본적인 학습태도를 평가하는 출결평가를 말한다.
3. 직무수행역량평가는 능력단위요소에서 제시한 수행준거와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측정하

는 평가를 말한다.

4. 진단평가는 선행평가와 사전/사후 평가 방식으로 실시하며 선행평가와 사전평가는 수업 전 혹은 수업 초기에 실시하고 사후평가는 수업 중 또는 수업종료 후 실시한다.

제12조(평가도구) 직무역량성취도 평가는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담당교수가 포트폴리오, 문제 해결 시나리오, 서술형 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일지/저널, 역할연기, 구두 발표, 작업장 평가 등의 평가도구를 선택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제13조(평가방법) ① 진단평가는 진단문항에 대해 학습자가 스스로 진단점수를 산출한 후, 본 대학교에서 마련한 진단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한다.

② 출석평가는 본 대학교의 출석평가 기준을 준용한다.

③ 직무수행역량평가는 수행준거와 지식, 기술, 태도를 중심으로 2회 이상 실시하되, 직무수행역량평가 배점 중 70% 이상은 수행준거를 기반으로 구성하되, 능력단위 요소의 단계에서도 평가가 가능하다. 단, 능력단위 요소 단계에서 평가하는 경우 수행준거를 기반으로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통해 수준이 미달하는 학생들에 대한 향상교육 및 재평가 방안은 평가계획서에 수립되어야 한다.

제14조(직업기초능력 진단평가) ① 직업기초능력 향상과 교육과정 개편을 위해 주기적으로 영역별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향상도를 측정하여 환류한다.

② 직업기초능력 진단평가를 위한 직업기초능력 평가도구 개발위원회와 직업기초능력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직업기초능력 평가도구 개발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이 외부위원 포함 6인 내외로 구성하여 평가도구 개발업무 등을 수행한다.

④ 직업기초능력 평가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이 외부위원 포함 6인 내외로 구성하고 직업기초능력 평가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15조(향상심화 교육과정 운영) ① 교과목 평가에서 직무수행역량 성취수준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의 교육품질관리를 위한 정규/비정규 향상 교육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개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01.>

② 교과목 평가에서 직무수행역량 성취수준을 이수한 학생들에 대한 전공심화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개발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성취수준) ① 성취수준은 학생들이 교과목별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수행준거, 지식, 기술, 태도 등에 도달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준별 판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직무역량성취 기준은 평가계획서에 따른다.

제17조(성적반영) ① 진단평가 결과는 성적에 반영하지 않는다.

② 직무수행역량평가 결과는 전체 배점 중 70% 이상을 반영한다.

③ 직무수행역량 향상 교육 이후의 재평가 점수를 가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④ 직무수행역량평가의 종합평가 점수는 출석평가 점수, 차수별 직무역량평가 점수, 재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⑤ 직무수행역량 성취를 충족했을 경우, 관련 교과목에 포함된 능력단위를 이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최종학기에 학과별 능력단위 이수결과를 산출한다.

제18조(능력단위 직무역량성취도 이수증 발급) 삭제 <2023.05.18.>

제19조(직무역량성취도 산출) ① 성취도 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성취도 평가 산출 대상 교과목은 직업기초능력과 NCS 능력단위와 자체개발한 책무가 활용된 전공 교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단, 책무가 포함되는 현장실습과 이론 교과목은 성취도 산출에서 제외한다.
2. 성취도 산출시 NCS 활용 능력단위와 자체개발 책무는 80%, 직업기초능력은 20%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3. NCS 활용 능력단위와 자체개발 책무별 성취기준은 70점 이상은 충족으로 하고, 그 미만은 미충족으로 처리한다.
4. 성취도 평가에 포함되는 교과목의 NCS 활용 능력단위 및 자체개발 책무의 점수는 출석 점수(출석 반영률을 적용한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단, 1개 교과목에 복수의 능력단위(책무)가 포함된 경우 능력단위(책무)별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② 제19조 제1항의 1~4호의 직무역량성취도 산출방법에 대한 내용은 별표1과 같다.

제20조(직무역량향상도 평가) ① 직무역량향상도는 매 학년도별 직무역량성취도의 증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과별 교육품질관리 계획서와 결과보고서에 성취도의 해당 학년도의 값과 전년 대비 증감률을 산출하여 기재하고 유지 및 개선을 위한 환류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교육혁신원은 직무역량성취도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성취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시행한다.

③ 학과는 직무역량성취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교육품질관리계획서에 포함하고 실시한다.

부칙(2015.11.13.)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4.2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0.2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19.)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5.18.)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0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분	직무역량성취도 = 능력단위 점수(0.8) + 직업기초능력 점수(0.2)		
	진공능력		직업기초능력
	NCS 능력단위	자체개발 책무	
능력단위 유형	NCS 기반 직무 능력단위	자체개발한 직무별 책무	6개 직업기초능력
성취도 포함	포함		
성취기준	70점(100점 만점)		
성취도 평가대상	대학, 학과, 학생		
평가 가중치	80%(취득점수 × 0.8)		20%(취득점수 × 0.2)
성취도 평가시기	학년도말		
성취도 직무구분	직무별 능력단위 성취도 산출	직무별 책무 성취도 산출	공통직무 (직업기초능력) 산출